

# 강서대학교 안전관리 추진 실적 점검



강 서 대 학 교

2023. 12. 28.

# 목 차

I. 대학 안전관리계획 개요 .....	1
1. 목표 및 기본방향 .....	1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	3
II. 위험 요인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	6
1. 재난 .....	6
① 자연재난 .....	6
② 사회재난 .....	8
2. 안전사고 .....	11
① 대학 안전사고 .....	11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	16
③ 연구실사고 .....	18
3. 감염병 확산 .....	20
①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20
4. 범죄 .....	21
① 일반범죄 .....	21
② 성범죄 .....	23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	27
① 산업재해 .....	27
② 중대재해 .....	33
6. 기타 .....	37
① 비상사태(전시, 침투·도발 등) .....	37

# 목 차

Ⅲ.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	39
Ⅳ.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	42
Ⅴ.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	51
Ⅵ.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54
※ [붙임1] 위험요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총괄) .....	55
[붙임2] 위험요인별 피해 현황(총괄) .....	56
[붙임3] 위험요인별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총괄) .....	57

## « 관련 매뉴얼 및 지침 (별도첨부) »

1. 학교시설 재난 및 사고 주요상황 대응매뉴얼(교육부, 2021)
2.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교육부, 2021)
3. 우편물테러 식별 및 대응요령(대테러센터)
4.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대응 매뉴얼(교육부, 2022)**
5. 다중이용시설 테러예방활동 가이드라인(대테러센터)
6. 차량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대테러센터)
7.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교육부, 2023)**
8. 대학생 현장실습 학기제 운용 규정 매뉴얼(교육부, 2021)
9. **교육시설안전 인증 신청가이드(교육부, 2022)**
10.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실무편람(교육부, 2022)**
11. 연구실 사고 비상대응매뉴얼(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12.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교육부, 2021)
13. 제4차('22~'2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법무부, 2021)
14. **2023년 폭력 예방 교육 운영 안내(지침)(여성가족부, 2023)**
15.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교육부, 2020)
16. 산업재해 예방 관련 주요사항 안내(교육부, 2022)
17. **2023년 중대재해 예방 추진 계획(교육부, 2023)**
18. 비상시 국민행동요령(행정안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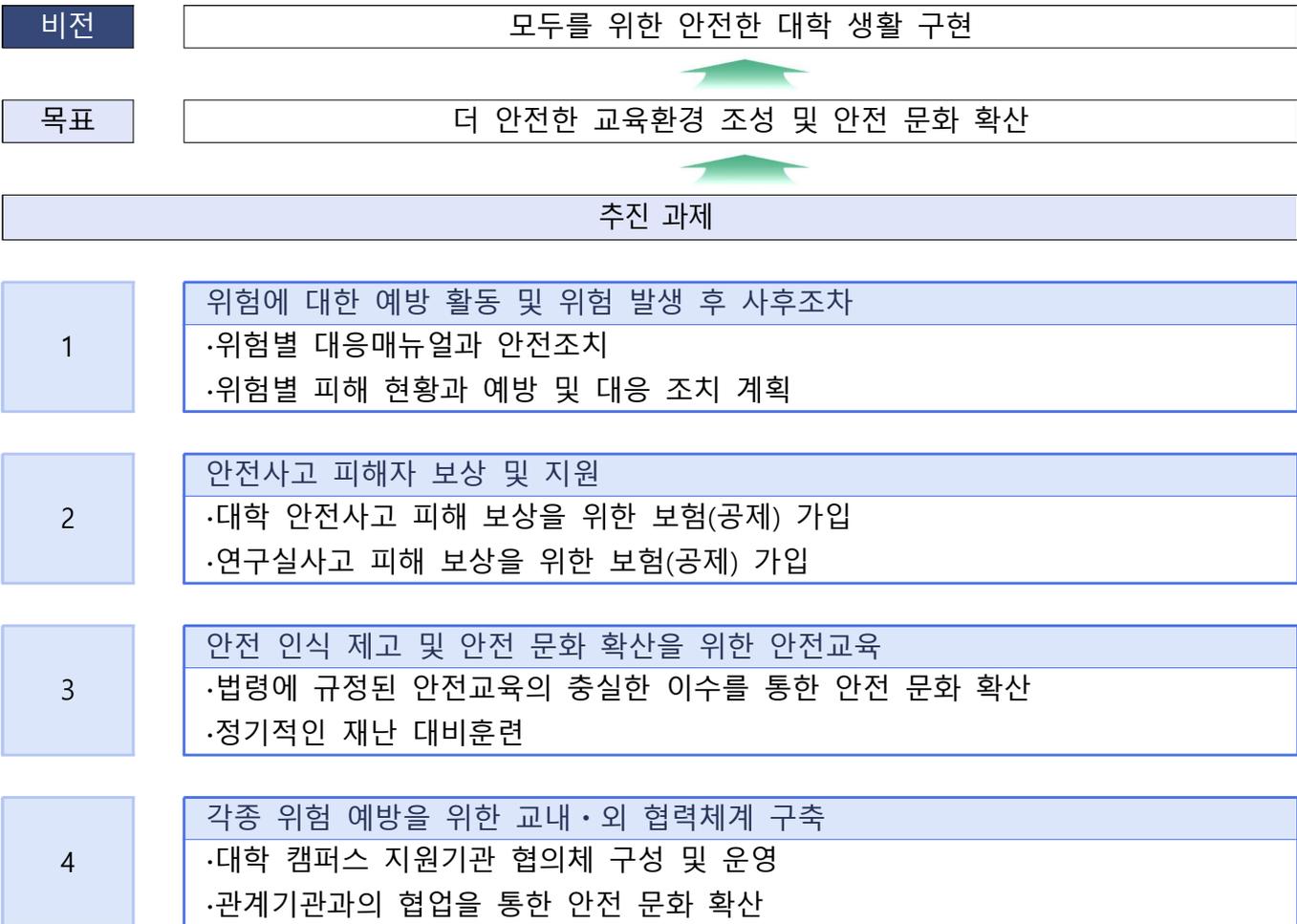
# I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요

##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목표 및 기본방향



### □ 목적

- 예시 내용**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 설정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행으로 재난 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업무처리 절차마련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조속한 복구 등 수습능력 제고
  - 재난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 관련 예산 편성과 전담 조직 구성·운영

### <위험요인별 관련 주요 법률>

구 분	주요 법률
1. 재난	■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2. 안전사고	■ 「고등교육법」, 「교육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3. 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범죄	■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5. 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6. 비상사태	■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 방침

##### 예시 내용

- 대학 안전보건 경영 방침 설정을 최우선 의무 이행 사항으로 규정
- 대학 소속 구성원뿐만이 아니라 대학 사업장 종사자를 보호 대상으로 고려하여 이사장 또는 총장의 안전보건 경영 리더십 강조
- 재난사고, 안전사고, 산업재해는 총괄 부서에서 중점 관리
- 사고 발생 시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위기관리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대학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재난·안전 관련 총괄 업무는 대학별 법정 총괄 재난안전부서(또는 경영책임자 직속 대학 전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인원 확보 노력
  - 재난·안전 분야별 세부 구체적인 업무추진은 대학별 업무분장 부서에서 지정 주관
  - 재난·안전 총괄부서는 대학 주요 관리 업무의 대응 절차 및 종합적인 예방대책 수립시행
- 체험 위주의 교육훈련을 통한 위기대응 능력 강화로 유사시 신속 보고체계 이용 및 유관기관의 비상 연락망 활용

#### □ 수립 절차

##### 예시 내용

- **(계획수립·시행)**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시행
- **(계획게시·제출)** 학교의 장은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공시 항목관리기관'에 제출\*
  - \* 대학안전관리계획은 대학정보공시 항목으로 '항목관리기관(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제출

##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 ① 학교 현황

#### □ 일반현황

<b>학교명</b>	강서대학교		<b>설립 구분</b>	사립	
<b>주 소</b>	서울시 강서구 까치산로24길 47				
<b>전 화</b>	02-2600-2400	<b>FAX</b>	02-2698-8876	<b>홈페이지</b>	<a href="http://www.kcu.ac.kr">www.kcu.ac.kr</a>
<b>총 장</b>	김용재	<b>총괄 안전관리책임자</b>	송지애(사무처장)		

#### □ 교직원 및 학생 현황 - 2023년 12월 현재

학생 (명)	학부생	대학원		합계	비고
		석사	박사		
	1,479	58	3	1,540	

교직원 (명)	교직원	전임교원	현업업무직원	학생 보호 인력	기타	합계
	57	47	5			109

#### □ 학교 위치 및 비상대피



조직체계 현황

 담당부서 현황

구 분	위험유형	주관부서	협조부서
총괄	대학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시설관리과	전 행정부서
1. 재난	자연재난	시설관리과	총무과
	사회재난	시설관리과	학생과
2. 안전사고	대학안전사고	학생과	총무과
	연구실 사고	시설관리과	총무과
	교육시설안전	시설관리과	총무과
3. 감염병	코로나19	기획예산과	학생과
4. 범죄	일반범죄	총무과	학생과
	성범죄	인권상담센터	
5.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총무과	시설관리과
	중대재해처벌법	총무과	시설관리과
6. 기타	비상사태	기획예산과	총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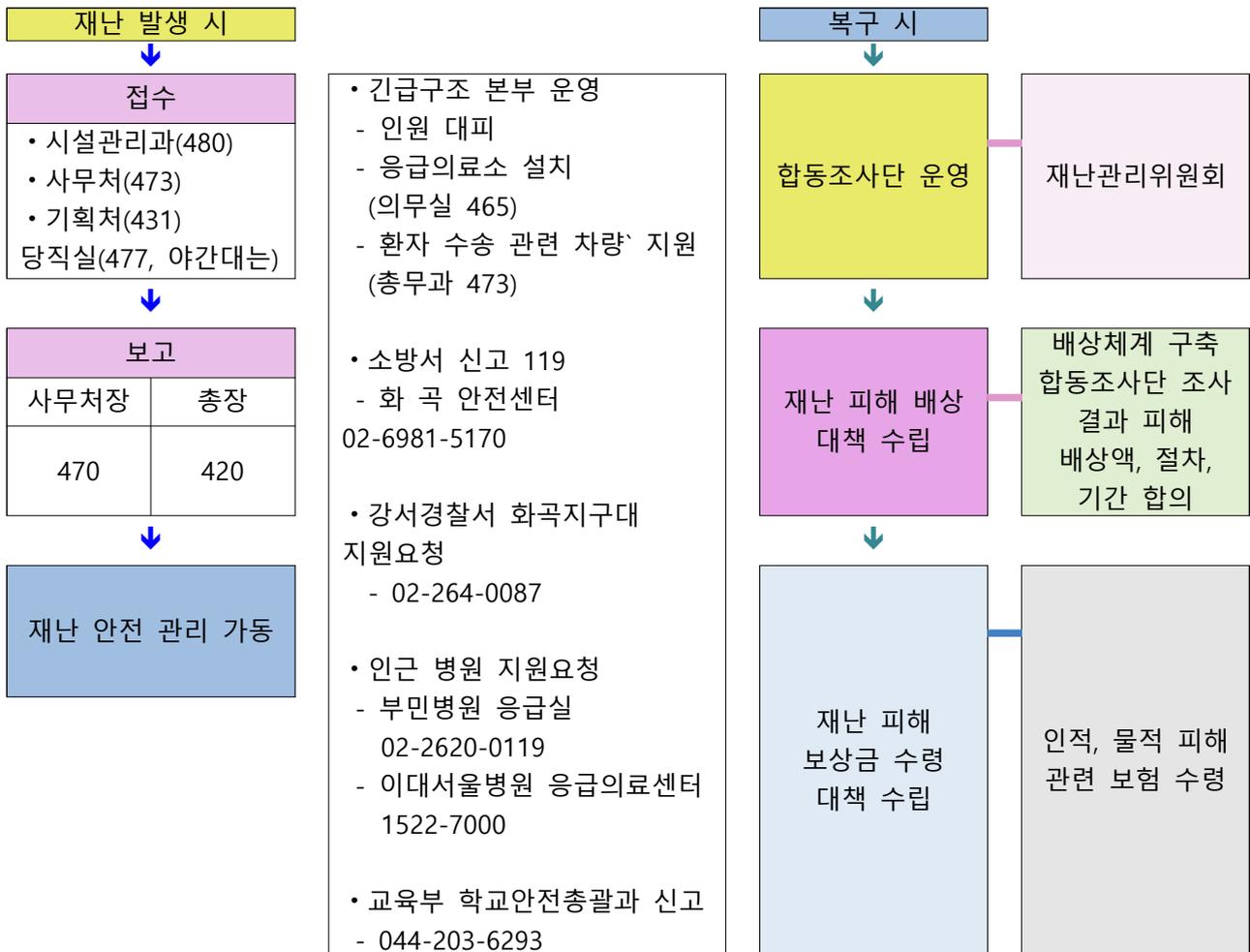
 비상 연락망

부서명	직책	성명	연락처
			사무실
총장실	총 장	김용재	02-2600-2420
사무처	처 장	송지애	02-2600-2470
기획처	과 장	배근철	02-2600-2431
교무처	과 장	김진식	02-2600-2451
학생과	과 장	이현주	02-2600-2461
총무과	주 임	김회집	02-2600-2473
국제교육교류원	계 장	조은지	02-2600-8172
디지털정보원	계 장	류후열	02-2600-2436
대외협력처	주 임	이진순	02-2600-222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계 장	김명석	02-2600-2480

### □ 재난 안전 관리체계



### □ 재난 발생 시, 대응체계



## Ⅱ 위험별 예방 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 1. 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 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① 자연 재난

##### <담당 부서와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1	시설관리과	계장	김명석	02-2600-2480	주관 부서
2	시설관리과	직원	허 울	02-2600-2482	
3	총무과	주임	김회집	02-2600-2473	협조부서
4	총무과	직원	신예술	02-2600-2474	

#### □ 피해 현황

구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21 학년도	2022 학년도	2023 학년도	평균
발생 건수	0	0	0	0	0	0
재산 피해(백만 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계	0	0	0	0	0

#### □ 원인분석

○ 해당 사항 없음

-

□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

○ 예방

- 비상 연락망 및 비상근무 체계 수시 점검
- 건물 내 피난 대피로 부착
- 구성원들에게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 사전 숙지
- 건물 내 취약 시설 수시 점검 및 보수

○ 자연 재난 예보 발생 때

- 학교와 관계기관의 비상 연락망 점검
- 기상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체제 돌입, 취약 시설 순찰 및 점검
- 단전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발전기 점검
- 침수 상황을 대비하여 수중펌프 점검
- 태풍피해에 대비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에 고정 작업 시행
- 대설 피해를 대비하여 염화칼슘 및 제설 장비 확보
- 지진피해에 대비하여 전기 및 가스 차단 방법 숙지
- 건물 내·외벽의 균열 및 파손 여부 점검 및 보수

○ 자연 재난 발생 때 대응

- 건물 내 침수, 붕괴 등 위험 발생 예상시 전기 및 가스 차단
- 교내 대피 안내방송 및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
- 위험시설물 접근금지표시 및 안전조치 시행
- 부상자 발생 시 응급조치 및 119신고
- 교내·외 주변 위험상황 파악 후 휴강 조치 등 학사조치 결정

○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

- 인명 및 시설 피해현황 파악 및 보고
- 피해시설 및 피해예상 시설물 출입금지(표지판 설치)
-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천원)						비고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21 학년도	2022 학년도	2023 학년도	합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2,633	2,865	3,299	3,299	3,645	15,741	
계	2,633	2,865	3,299	3,299	3,645	15,741	

## ㉔ 사회재난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1	시설관리과	계장	김명석	02-2600-2480	주관부서
2	시설관리과	직원	허울	02-2600-2482	
3	학생과	과장	이현주	02-2600-2461	협조부서
4	학생과	직원	김예은	02-2600-2462	

### □ 피해현황

구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21 학년도	2022 학년도	2023 학년도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0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0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00
	부상	0	0	0	0	0.00
	계	0	0	0	0	0.00

### □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예방**

- 건물 내 피난대피로 부착
- 매월 소화기, 소화전 등 소방시설 작동상태 점검 및 관리
- 년2회 소방시설 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및 보완공사
- 년2회 공기 중 석면함유농도 측정(유해성 평가)
- 년2회 공기 질 검사시행

**사회재난 발생 시 대응**

- 최초발견자 발신기 작동 및 자동화재탐지장치 작동
- 소방서(119) 또는 화곡119안전센터 신고
- 비상 방송설비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재난사실 전파
- 화재 발생위치 및 인명피해 및 물적피해 발생가능성 신속 파악 및 보고
- 자위소방대 초기대응 실시
- 가스설비 차단 및 유관기관 통보(한국전력, 서울도시가스)
- 소방서 현장 도착 후 지시에 따르며 협조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

- 교육부보고 및 피해현황 내부보고
- 피해시설 및 피해예상 시설물 출입금지
-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자위소방대 편성 현황**

자위소방대 대원 편성 및 임무 현황						
구 분		소 속	성 명	개별임무	비상연락체계 사무실(내선번호)	
대 장		총 장	김 용 재	총괄	420	
부대장(I)		사무처장	송 지 애	소방안전관리자	470	
지휘	지휘통제	사무처장	송 지 애	현장 지휘	470	
현장 대응	지휘 통제팀	시설관리과	김 명 석	현장 지휘	480	
		총무과	박 찬 선	119 신고	471	
	비상 연락팀	총무과	김 회 집	교내 화재 통보	473	
		총무과	신 예 슬	관리팀연락	474	
	초기 소화팀	교목실	김 범 수	소화기	428	
		교양교육원	이 정 우	소화기	266	
		도서관	김 진 혁	소화기	491	
		산학협력단	박 영 민	소화기	227	
		시설관리과	허 율	옥내소화전	482	
		입학관리과	원 관 재	옥내소화전	448	
		총무과	정 상 연	소화기	472	
		평가관리과	김 경 섭	옥내소화전	271	
	피난 유도	국제교육교류원	신 봉 수		243	
		교무과	임 주 은		454	
		기획예산팀	배 근 철		431	
		산학협력단	조 준 형		226	
		디지털정보원	류 후 열		436	
		취.창업지원센터	양 경 숙		203	
		학생과	김 예 은		462	
		학술연구소	이 미 숙		(8)191	
	응급 구조팀	교무과	임 채 은		453	
		교수학습지원센터	이 열 매		242	
		기획예산팀	신 민 규		432	
		남북통합지원센터	우 현 경		201	
		입학관리과	성 예 은		447	
		취창업지원센터	강 윤 신		204	
		학생상담센터	최 은 영		297	
		학생과	이 현 주		461	
휴일/야간	구 분	A조(야간)	B조(야간)	C조(휴일)	D(휴일)	
		( 24시간 )	( __ ~ __ 시 )	( 24시간 )	( __ ~ __ 시 )	
	운영책임자					
	대 원	경비		경비		
비 고.						

비상 연락망

구분		성명	연락처	비고
내부	소방안전관리자	송지애	(내선) 470	사무처장
	소방 전기	김명석	(내선) 480	시설관리과
	소방 기계	이승철	(내선) 484	시설관리과
	총무과	김회집	(내선) 473	
	기획예산과	배근철	(내선) 431	
	의무실	이현주	(내선) 461	
긴급 대응 기관	강서소방서		02-6981-5074	
	부민병원		02-2620-0119	
	강서구청		02-2600-5204	재난안전
	서울강서경찰서		02-2620-9270	형사과
	이대서울병원		02-2650-5114	응급실
협력 기관	한국전력	전기	02-2640-2123	강서양천지사
	강서수도사업부	수도	02-3146-3800	강서수도사업소
	프라임방재	소방	1544-5469	
	서울도시가스	가스	02-2691-7744	
	오티스승강기	승강기	1661-6112	
	현대승강기	승강기	1577-0603	
	극동파워	전기		
보고기관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044-203-6355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천원)						비고
	2019학년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합계	
소방시설 정기점검	4,620	4,620	4,620	4,620	4,730	23,210	
소방시설 공사	6,006		4,972	18,227	6,600	35,805	
계	12,645	4,620	9,592	22,847	11,330	59,015	

## 2. 안전사고

### ① 대학 안전사고

####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1	학생과	과 장	이현주	02-2600-2461	주관부서
2	학생과	직 원	김예은	02-2600-2462	
3	총무과	주 임	김회집	02-2600-2473	협조부서
4	총무과	직 원	신예슬	02-2600-2474	

### □ 피해현황

구 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21 학년도	2022 학년도	2023 학년도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계	0	0	0	0	0

### □ 원인분석

○ 해당사항 없음

-

###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 (교내활동)

- 학교안전사고 유사사례, 통계 등의 검토·분석을 통한 사고유발 요인 사전 예방·대응관리와 안전사고 유형별 신속한 보고체계 및 적절한 보상·회복 지원 기반 조성

#### ○ (교외활동)

- 총학생회, 대학본부 등이 주관하여 교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 시 교통·숙박시설 이행, 행사 관련 각종 보험가입 등 학생안전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점검하고 교육

### ○ (학생 집단활동 안전)

- 참가 학생 집단활동의 형태, 참가자, 규모, 지역, 활동(프로그램)에 따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시행
- 대학 및 학생회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집단연수 운영 시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준수사항 마련
-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최소한의 안전관련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대학본부는 학기초 학생회 간부 등을 대상으로 집단연수 시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교육
- 대학생 집단행사 시 인파 밀집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철저

####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시 최소 준수 사항]

1. 숙박시설(장소)에 관한 사항(비상대피로, 소화기 비치 등)
2. 교통수단에 관한 사항
3. 단체 활동에 대한 보험 가입
4. 행사(계약) 전 답사
5. 참여 학생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실시(음주/고압적 행위 금지 등)
6. 필요시 교직원 동행
7. 예산 집행 내역 공개
8. 집단연수 계획수립에서 계획 시행까지 전 추진과정에 대해 인파 밀집 상황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비하고, 자체점검 및 사전교육
9. 사람이 많이 밀집된 장소에서는 교직원 등 안내자(인솔자)가 안내하도록 하고 앞 사람과의 간격을 유지하는 등 인파 사고 예방 조치
10. 집단연수, 행사 운영 등의 과정에서 위험한 인파 속에서는 인파의 흐름에 따르면서 천천히 대각선으로 가장자리를 향해 움직이며 탈출로 찾기

## 1

### 교외에서 진행하는 각종 연수 관련

#### 가. 숙박시설(장소)에 관한 사항

- 숙박시설(장소) 등에 대한 **지자체 등의 안전점검 결과**를 확인
  - 최근 1년 이내 지자체 시설안전 점검결과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 점검결과**
  - 숙박시설 소재지 지자체에서 하가받은 **숙박정원 준수 여부**
- 숙박시설(장소)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여부 등 확인**
  - 영업 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 보험 유효기간/사고당 보험금액/보상범위 등 확인
  - 숙박과 관련된 계약서에 안전사고 발생 시 배상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영업 배상 책임보험은 물론 화재보험 가입기관과의 계약 권장
- 숙박시설 계약 시 **미등록 숙박업소, 무허가건축물 이용 자제** 및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검토
  - 수련시설 안전정보 : 학교안전정보센터(<http://www.schoolsafe.kr>)

#### 나. 교통수단에 관한 사항

- 버스 등 이동수단 관련 **보험증권 및 차량보유 현황표 확인**

- 차량 보험증권 사본 및 차량보유 현황표 : 보험 유효기간/사고당 보험금액/보상범위 등 확인
-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하며, 행사 당일에는 배차된 차량이 계약 서상의 차량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
- 계약조건으로 **버스 차종 및 연식, 승차정원 등 안전에 필요한 조건을 적시**

○ **운전자 등 차량 안전 확인**

- 차량 계약 시 해당차량의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교통안전공단)** 확인 및 **음주측정 실시 요청(관할 지방경찰청 교통 관련 부서)**

**다. 단체 활동에 대한 보험 가입**

○ 학교에서 이미 가입한 보험 여부 및 보상(배상) 범위 등 확인

- 기존에 대학에서 가입된 보험의 **보상(배상) 적용 범위 확인**  
사고 발생 시 보험적용 여부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입학 전 신입생 등에 대해서도 보상(배상)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보상 범위가 사고 건당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 참가 학생 규모에 따라 보상(배상) 규모가 충분치 않을 수 있으므로 참가인원 대비 보상(배상) 규모 확인

○ 기존 보험으로 보상 범위가 충분치 않은 경우 행사기간 동안 적용이 가능한 별도 보험 가입 검토

- 여행자 보험, 기존 보험에 특약 추가 등 다양한 방안 강구

**라. 행사 전 답사**

○ 보험 가입 여부, 시설물 안전 점검 여부, 화재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 체계** 확인

- 소방시설, 완강기, 대피로, 인근 **소방서, 병원, 지자체 등과의 연락 체계**

○ 차량 접근성 및 진입로 확보 여부

○ 교직원(시설 담당자) 의 참여로 시설 안전 확인 강화

**마. 참가 학생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 음주, 폭행(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포함)에 대한 **사고 예방 교육 시행**

- **관련 부처 교육 및 교육자료 이용**

○ 행사장 도착 시 소방시설 및 대피로 등 안전사고 대비 정보 제공

- 숙소 및 행사 장소 소화기 위치, 응급상황 발생 시 대피경로

**바. 교직원 동행**

○ 대학 측에서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이거나 학생들의 요청이 있을 시 교직원이 동행

**사. 예산 집행 내역 공개**

-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행사 경비에 대해서는 회계 관리 내역을 공개하여 예산 집행관리 투명화

**아. 기타**

- 행사 전후 기상예보 상황 확인 후 숙박, 버스 등의 계약에 대한 일정 연기, 취소 등 결정

**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반드시 대학 측 주관하여 실시**

- 입학 전에 실시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대학교육의 일환으로 학생 보호의 책임이 있는 **대학 측이 주관하여 가급적 교내에서 실시**
  - 학생들에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학은 주관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처리 등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학생회 주관 입학 전 오리엔테이션 금지**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가급적 **1일 내에 완료**토록 하고, **2일 이상** 진행할 경우 대학 관계자 (교수 또는 직원) 및 행사 주관 학생을 반드시 책임자로 지정하여 지도·감독을 강화
- 대학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경비 중 **숙박비 지원** 지양

**나. 대학과 무관하게 진행된 입학 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사고 발생 때 엄정히 대처**

- 대학과 무관하게 진행된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행사를 주관한 측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사고 발생 시 행사 주관자 징계 등 엄정한 대처 및 재발 방지
  - 입학 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으로 **대학 당국에서 주관하지 않고, 학생회 등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행사는 학부모에게 고지하여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운영비 등의 투명성 확보**

- 법적 근거 없는 오리엔테이션 비용의 징수를 금지하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학교 예산으로 운영하여 **공식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정착**
- 학생회비를 총학생회가 집행할 경우, **학교의 회계 집행 규정을 준용**토록 학칙에 규정하여 투명성 확보

**라. 사전교육 실시 강화 등**

- 학생 대상 행사 시 행사를 기획·주도하는 **관련자를 대상으로 행사 전 반드시 음주,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행사 진행 중 발생 될 수 있는 안전사고, 성폭력(성희롱), 가혹(폭력)행위 등에 대한 예방 조치 강구
- 성교육 등 **인권 관련 내용**을 가급적 **교양과목**으로 지정을 권장

**마. 대학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 신입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대학 생활 설계 및 적응을 지원하는 등, 본래 취지에 맞게 프로그램 편성 운영
  - 대학 생활에 필요한 교육과정, 수강 신청, 장학금, 각종 복지혜택, 상담 등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되, 학생회 등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

**바. 학생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 대학생의 집단연수 운영 시 **최소 준수사항 기준**을 적용하고 **교직원 동행 의무화**

### 3 사안 발생 시 대처

- 1차 : 응급처치와 병원 후송을 위해 경찰서·소방서 등에 연락
- 2차 : 해당 지자체와 교육부 등에 사고 발생 상황 통보
  - 교육부 비상 연락처 : 044) 203-6293 (학교안전총괄과), 044-203-6118(당직실)
  - 사고 발생 보고 : moe119@korea.kr

### 4 사고 발생 후속 조치(환류 시스템)

- 현장 확인 및 대처
  - 학생 피해 상황 파악 → 보호자 연락 → 응급처치 → 소방서, 경찰서 등 신고
- 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에 따라 신고
  - 교내 관련 부서 협조 요청 및 교육부에 사고 발생 상황 통보
- 원인조사 및 사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보험 청구

####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천원)						비고
	2019학년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합계	
<b>계</b>							

## ㉔ 교육시설 안전사고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등

※ (관련 기준)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기준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운영 기준 등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1	시설관리과	계장	김명석	02-2600-2480	교내시설 주관부서
2	시설관리과	직원	허울	02-2600-2482	
3	총무과	주임	김회집	02-2600-2473	주변시설 주관부서
4	총무과	직원	신예슬	02-2600-2474	

### □ 피해 현황

구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21 학년도	2022 학년도	2023 학년도	평균
발생 건수	0	0	0	0	0	0
재산 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계	0	0	0	0	0

### □ 원인분석

○ 해당 사항 없음

-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교육시설 안전인증**
  - 2024학년도 교육시설안전인증 취득 계획수립
- **건축물**
  - 계절별 교육시설물 자체 안전점검 시행(매년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3회)
- **기계설비**
  - 기계설비 유지관리
  - 특성사용 가스시설 정기 검사 실시(도시가스)
- **전기설비**
  - 수변전설비 및 발전설비 정기 검사(3년마다 전기안전공사 검사)
  - 전기 시설 외부 업체 위탁(월4회 극동파워)
  - 전기 시설 수시 자체 점검
- **승강기 시설**
  - 승강기 매월 위탁업체 안전 점검 및 년1회 정기검사(승강기 검사원)
- **안전사고 및 재산피해 또는 인명사고 발생 시**
  - 인명피해 발생 시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조 요청
  - 피해 현황 파악 및 교내 및 교육부 보고(사고 규모에 따라 결정)
  - 사고 현장 출입 금지
  - 원인조사 후 피해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교내 건설공사 진행 시**
  - 교내 건설공사 진행 시 교육시설 및 이용자들의 안전에 관한 보고서 작성 요청
  - 제출된 보고서 안전성 평가 검토 및 승인
-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점검**
  - 주변 공사장 안전울타리, 안전 통행로 상태 점검
  - 공사 차량 안전운행 여부 점검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천원)						비고
	2019학년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합계	
냉난방기유지관리	13,451	5,411	1,155	3,294	13,877	37,188	
시설공사	61,198	109,192	75,938	110,475	223,534	580,337	
수도요금	32,249	14,329	21,198	46,975	85,360	200,111	
승강기위탁	6,300	8,106	7,958	8,505	8,549	39,418	
전기요금	95,477	93,244	112,349	137,533	17462	456,065	
전기위탁	13,758	10,560	10,560	10,560	10,560	55,998	
시설소모품	9,400	11,500	9,176	10,244	24,000	64,320	
전기소모품	6,323	5,500	7,88	9,693	21,797	44,101	
전화요금	6,513	7,689	7,693	7,166	9,070	38,131	
전기공사	38,874	32,141	43,589	4,587		119,191	
도시가스	32,865	28,094	42,327	52,678	56,601	212,565	
석면안전			1,030	58,362		59,392	
계	316,408	325,766	333,761	460,072	470,810	1,906,817	

### ③ 연구실사고 ※ 연구실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별도 관리 시 주요 사항 요약작성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5조~제7조, 제9조, 제12조~제14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9조 등

※ (관련 기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등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1	시설관리과	계장	김명석	02-2600-2480	주관부서
2	시설관리과	직원	허 율	02-2600-2482	
3	총무과	주임	김회집	02-2600-2473	지원부서
4	총무과	직원	신예슬	02-2600-2474	

#### □ 피해 현황

구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21 학년도	2022 학년도	2023 학년도	평균
발생건수		1	0	0	1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부상		1	0	0	1
	계		1	0	0	1

#### □ 원인분석

○ 간호학과 실습 중 주사액이 담긴 앰플을 따다가 앰플이 깨져 사면에 손가락이 스쳐 손가락에 박혀 베이는 사고

#### □ 예방·대응 및 재발 방지 대책

##### ○ 연구실 신규안전교육

- 근로자 임용 후 6개월 이내 간호학과 4시간, 식품영양학과 8시간 이상
- 학부(과)생 연구 활동 시작 3개월 이내 2시간

○ 연구실 정기안전교육

- 간호학과 연구 활동 종사자(교직원, 학과생) 년3시간 교육 이수
- 식품영양학과 연구활동종사자(교직원, 학과생) 반기 6시간 교육 이수

○ 연구실 안전점검 실시

- 연구실 일상점검표 작성 간호학과 1주마다, 식품영양학과 매일
-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실시 - 외부 위탁 매년 1회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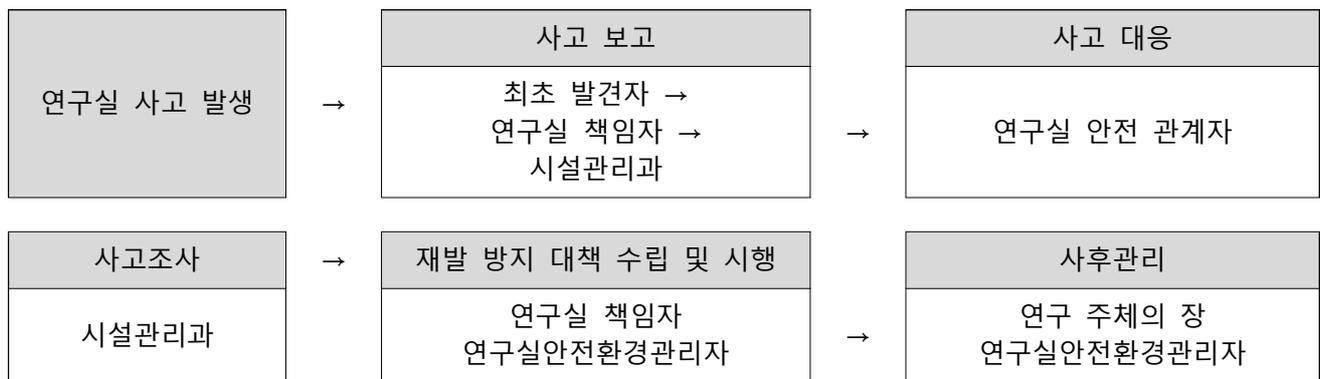
○ 안전사고 및 재산 피해 또는 인명사고 발생 시

- 인명피해 발생 시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조 요청
- 피해 현황 파악 및 교내 및 교육부 보고(사고 규모에 따라 결정)
- 사고 현장 출입 금지
- 원인조사 후 피해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연구활동종사자 안전 보험

- 연구활동종사자 안전 보험 가입
-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 연구실 사고 대응 단계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단위 : 천원)

대책명	연도별 예산(천원)						비고
	2019학년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합계	
공제가입증서	316	279	355	332	393	1,675	
연구실환경관리	4,352	4,800	2,297	7,059	8,867	27,375	
계	4,668	5,079	2,652	7,391	9,260	29,050	



## 4. 범죄

### 1] 일반범죄

#### 폭력행위처벌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 폭력행위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기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등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1	총무과	주 임	김회집	02-2600-2473	주관부서
2	총무과	직 원	신예슬	02-2600-2474	
3	학생과	과 장	이현주	02-2600-2461	지원부서
4	학생과	직 원	김예은	02-2600-2462	

### □ 피해현황

구 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21 학년도	2022 학년도	2023 학년도	평균
발생건 수						
피해자 수						

### □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 (범죄예방)

교내 취약 시설에 대한 보안시스템을 사전 점검하고 일반범죄로부터 구성원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체계적이며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피해 확산을 방지함

### ○ (사전 대책)

- 보안시스템(건물 출입 통제시스템 및 CCTV) 및 경비를 통한 순찰체계 확립
- 거동 수상자 발견 시 총무과 및 시설관리과로 신고
- 사고 발생 시 신고 및 초동대처 매뉴얼 수립 및 공지
- 경비실 위치 공지
- 화장실 비상벨 설치 완료 홈페이지에 공지

### ○ (일반범죄 발생 시 대응)

- 보고 체계에 따라 보고
- 학생과/총무과/시설관리과 조치

피해자 신고	→	총무과 : 02-2600-2473	→	에스원 직원
목격자 신고		학생과 02-2600-2461		
비상벨 작동		시설관리과 02-2600-2480		

### ○ (일반범죄 발생 시 대응)

가. 주변에 주취자/거동 수상한 자 발견 시

-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상황을 공유하고, 혼자인 경우 대학 본부에 신고
- 화장실 내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거나 큰 소리로 주변의 도움을 요청

나. 위급상황에 직면했을 때

- 큰소리로 주변에 도움 요청
- 화장실이 가까운 경우 화장실 내 비상벨을 누르면 시설관리과(주간), 경비실(야간) 직원이 바로 출동

다. 주변의 위급상황을 목격

- 큰소리로 주변에 사람이 있음을 알림
- 총무과/학생과/시설관리과에 전화나 비상벨로 상황을 알리고 직원이 출동할 때까지 상황 주시
- 나중을 대비하여 휴대폰등으로 사진을 촬영

##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천원)						비고
	2019학년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합계	
본부무인기계위탁	12,804	12,804	14,968	15,576	16,763	72,915	
경비위탁	66,272	64,200	66,858	72,248	75,768	345,346	
계	79,076	77,004	81,826	87,824	92,531	418,261	

## 2 성범죄

### 양성평등기본법 & 성폭력처벌법

####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같은 법에 따라 성희롱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성폭력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 범죄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10조, 제11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등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1	인권상담실	실장	최영미	02-2600-2552	주관부서
2	인권상담실	담당사	최은영	02-2600-2299	

### □ 피해현황

구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21 학년도	2022 학년도	2023 학년도	평균
발생건수	성희롱			2	0	1.00
	성폭력			0	1	0.50
	계	0	0	0	2	1
피해자 수	성희롱			2		2.00
	성폭력			0	1	0.50
	계	0	0	0	2	1

### □ 원인분석

- 대학 구성원 중 가부장적 권력 구조하에 있는 교원은 기존의 성규범이 일상을 지배하는 상황으로 자신들의 언동이 성적 대상화가 바탕이 됨을 전혀 인지하지 못함
- 성적 농담, 성을 희화화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놀이문화로 치부하는 관대함의 문제

### □ 예방·대응 및 재발 방지 대책

-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업무로 인한 것으로 보이거나 비대면 운영이 길어지면서 인권센터에 대한 접근성이 감소하여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음. 따라서, 인권센터 상담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상담기구의 역할을 상기시켜 학교 구성원이 고충·상담·신고 등 해당 부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
- 대학 구성원(학생, 교원 및 직원 등)에 적합한 다양한 대상별 예방 교육 시행
- 온·오프라인 고충 상담창구 운영 및 성희롱·성폭력 통합 예방 지침 마련
- 사건 처리 이후 피해자 상담 및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가해자 교육 및 상담과 조치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하여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움
- 고충 상담원의 직무 역량 강화 및 폭력 예방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고충 상담원 교육 실시
-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양질의 예방 교육의 지속 진행

### 〈성폭력·성희롱 피해상담 절차〉

#### 성폭력·성희롱 피해상담

비공식 처리

공식 처리

성폭력상담실  
당사자 간 사과 및 합의 중재 처리

신고 및 접수

신고 : 피해자, 대리인, 제3자  
접수 : 방문, 전화, 메일, 홈페이지

사건조사

피해자 조사 / 피신고인 조사  
관련인 조사 / 증거자료 검토 및 조사

심의 의결

성폭력 여부 판단 / 사건조정  
대학 징계위원회로 징계받을

사건 처리

가해자 사과 및 징계, 상담 및 교육

결과 통보

피해자, 관련자의 이의신청

사건 처리 전 과정은  
피해자 보호를  
원칙으로 합니다.

###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21 학년도	2022 학년도	2023 학년도	합계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200	800	1,000	학생
고위직 성인지감수성 교육				300	400	700	교직원
인권상담 운영지원				3,435	689	4,124	
계	0	0	0	3,935	1,889	5,824	

# 신 고 서

상담 번호	
사건 번호	
접수 일자	
접수 담당자	

## 1. 신고인이 당사자인 경우

- ◎ 인적 사항 등 모든 정보는 상담실 내부 자료로만 보관됩니다. 사건 해결을 위한 필요 최소범위 이외에는 학내·외를 불문하고 일절 공개하지 않습니다.
- ◎ 인권침해 등 대책위원회 등 절차에서도 이름 정보 등은 가명을 활용하여 익명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학번(교번)의 경우, 기입을 권장하나 원하지 않는 경우 공란으로 남겨두십시오.

이름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분류	<input type="checkbox"/> 대학생 <input type="checkbox"/> 대학원생 <input type="checkbox"/> 강사 <input type="checkbox"/> 직원 <input type="checkbox"/> 교원 <input type="checkbox"/> 외부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소속			학번(교번)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 2. 신고인이 제3자인 경우

- ◎ 신고자의 인적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십시오.
- ◎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학번(교번)은 공란으로 남겨두십시오.
- ◎ 피해자 주소를 모르는 경우, 공란으로 두되 피해자 연락처와 이메일은 정확히 기입해 주십시오.

피 해 자	이름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분류	<input type="checkbox"/> 대학생 <input type="checkbox"/> 대학원생 <input type="checkbox"/> 강사 <input type="checkbox"/> 직원 <input type="checkbox"/> 교원 <input type="checkbox"/> 외부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소속			학번(교번)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신 고 인	관계	<input type="checkbox"/> 친구 <input type="checkbox"/> 선·후배 <input type="checkbox"/> 지도교수 <input type="checkbox"/> 동료 <input type="checkbox"/> 상사 <input type="checkbox"/> 가족 <input type="checkbox"/> 기타			신고 접수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였습니까?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연락처					

### 3. 피신고인

◎ 신고자가 알고 있는 범위 이내에서 작성하여 주시되, 이름과 소속은 정확히 기입해 주십시오.

이름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분류	<input type="checkbox"/> 대학생 <input type="checkbox"/> 직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대학원생 <input type="checkbox"/> 교원	<input type="checkbox"/> 강사 <input type="checkbox"/> 외부인
소속	학번(교번)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신고인과 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동기 <input type="checkbox"/> 동료 <input type="checkbox"/> 애인	<input type="checkbox"/> 선배 <input type="checkbox"/> 상사 <input type="checkbox"/> 모르는 사람	<input type="checkbox"/> 후배 <input type="checkbox"/> 부하	<input type="checkbox"/> 지도교수 <input type="checkbox"/> 친구 <input type="checkbox"/> 기타

### 4. 피해 유형(해당란에 모두 표시)

언어적 괴롭힘    신체적 접촉    학업·업무상의 차별    스토킹    기타

### 5. 피해 내용

◎ 아래 공란에 피해 내용을 기술하여 주시되, 별도의 진술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6. 피해 발생 횟수 및 기간

◎ 피해 발생일은 가급적 정확히 기입할 것을 권장합니다.

◎ 정확한 일자를 기억하지 못할 경우, 대략적인 시점을 기재해 주십시오.

발 생 횟 수 :  일회성             반복성

최초 발생일 : 20    년    월    일                                    최근 발생일 :        년    월    일

### 7. 피해 발생에 대해 피해자가 취한 반응 및 행동 (해당란에 모두 표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음                                     말로 거부 의사를 나타내었음

행동으로 거부 의사를 나타내었음                             제3자를 통해 문제를 제기함

변호사·경찰의 도움을 구함

기타(구체적으로) : [예시] 처우의 부당함을 메일로 써서 전달하여 항의함

### 7-1. 피해 발생에 대해 신고인이 취한 반응 및 행동 (해당란에 모두 표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음                                     말로 거부 의사를 나타내었음

행동으로 거부 의사를 나타내었음                             제3자를 통해 문제를 제기함

변호사·경찰의 도움을 구함

기타(구체적으로) : [예시] 처우의 부당함을 메일로 써서 전달하여 항의함

### 8. 신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신고인의 행동 변화

중지             감소             변화 없음             증가             기타

9. 희망 조치 사항(중복 체크 가능)

- 규정에 따른 조치       중재       교육을 통한 재발 방지       공간 분리  
 개인적 수준의 대응(사과, 재발 방지 약속 등)  
 심리적·의료적·법률적 지원       기타 :

10. 기타 하고 싶은 말

신고인                    는                    년                    월                    일자로 신고하며 강서대학교의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에 따른 조사절차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신고인

(인/성명)

\*상담 가능한 시간을 최대한 많이 아래 칸에 표시해주세요.

시간	월	화	수	목	금
09:00~10:00					
10:00~11:00					
11:00~12:00					
13:00~14:00					
14:00~15:00					
15:00~16:00					
16:00~17:00					



##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 ① 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관련 조항) 제3조, 제15조~19조,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54조  
 ※ (관련 기준)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 현업업무 종사자 업무 내용 규정  
 ☞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 관련 업무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1	총무과	주 임	김회집	02-2600-2473	주관부서
2	총무과	직 원	신예슬	02-2600-2474	
3	시설관리과	계 장	김명석	02-2600-2480	지원부서
4	시설관리과	직 원	허 울	02-2600-2482	

### □ 피해현황

구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21 학년도	2022 학년도	2023 학년도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0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0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00
	부상	0	0	0	0	0.00
	계	0	0	0	0	0.00

### □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 □ 예방·대응 및 재발 방지 대책

- **(안전조치)** 위험 기계·위험물질 사용 시, 조작·운반 등 위험한 작업 시, 추락·붕괴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조치 이행
- **(보건조치)** 분진·흙·병원체, 고온·저온·소음과 적정기준 미준수 등에 의한 건강장애발생과 단순 반복 작업 등의 인체 부담 작업 시 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조치이행

※ 관련 매뉴얼 : [별첨16] 산업재해 예방 관련 주요사항 안내(교육부, 2022)

≪ 산업재해 예방·대응 및 재발 방지 대책(예시)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21년도 산업재해 통계분석 등을 바탕으로 기관별 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을 반영한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추진
- '22년도에는 구성된 체계에서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포함한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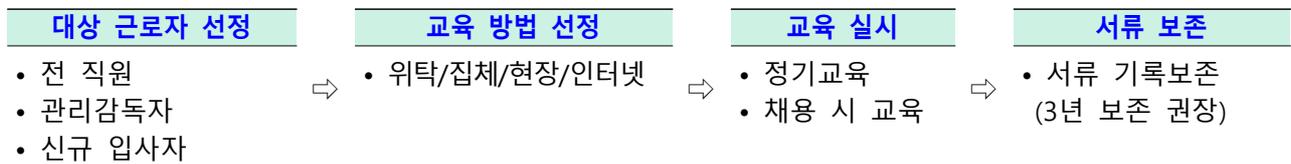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운영
-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등을 선임하여 안전·보건 업무수행

※ (의무대상)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경비 및 통학 보조, 조리시설 등 현업업무 종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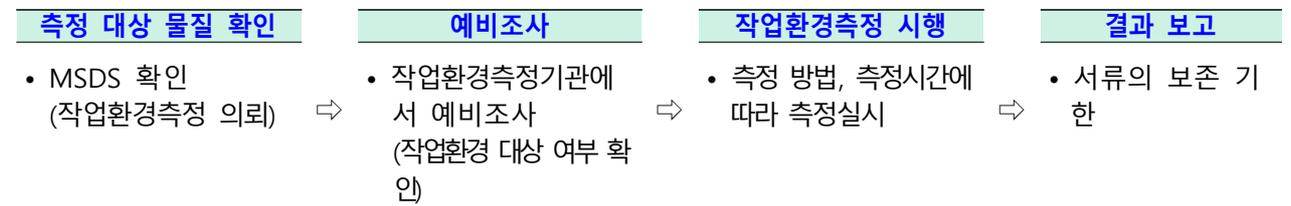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은 작업으로 인한 유해·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



○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작업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인자(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에 근로자의 노출 수준을 평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
-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직업병 발생 예방



○ **근로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 상태 및 수준을 파악,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 적절한 작업 배치와 직업성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사후관리
- 집단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이나 건강장해 요인을 가진 근로자의 발견과 적절한 조치

**대상 근로자 선정**

- 전체 근로자
- (사무직) 2년에 1회
- (사무직 외) 1년에 1회



**건강진단기관에 진단의뢰**

- 건강진단기관에 의뢰 또는 근로자 개별 희망기관에서 실시



**건강진단 실시 및 결과 통보**

- 검진 대상자 독려

○ **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은폐해서는 안 되며, 재해를 통해 향후 동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시행

**재해 유형 확인 및 보고**

- 경미한 사고
- 3일 이상 휴업재해
- 중대재해(즉시 보고)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제출
- 업무상질병일 경우 산재 승인일 기준 1개월 이내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및 이행**

- 재발 방지계획서 작성
- 수시 위험성 평가
- 수시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 **산업재해 통계기록 및 유지·관리**

- 산업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국립대학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방향 설정
- 교육부의 산업재해 통계 보고 양식에 따라, 교육기관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매년(연초) 관리

○ **안전시설 및 보호구**

- 보호구 착용은 작업환경 또는 작업수행 시 발생하는 유해·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
- 노출된 유해·위험의 종류를 알고 그에 적절한 보호구를 선정하여 지급하고 필요시 착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

**대상 작업 파악**

- 보호구 지급 대상 유해 위험 작업 파악



**보호구 선정 및 구입**

- 작업에 따른 적절 보호구 선정 및 구입



**보호구 지급**

- 보호구 지급 및 올바른 착용 방법 교육



**서류 보존**

- 보호구 지급 대상 서류 기록보존(3년)

○ **유해·위험 방지 활동**

- 위험성 평가

- 산업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자율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
  -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 평가의 실시) 및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연 1회, 수시 평가는 건물, 기계·기구 등의 보수 또는 신규 도입 및 재해 발생 시 실시

-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있는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 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하기 위한 조사
-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3년마다 1회, 수시 평가는 건물, 기계·기구 등의 보수 또는 신규도입 및 재해 발생시 실시

##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 안전 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현장 보존

-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현장 관계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 조치
-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한다거나 장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같이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를 제외한 사고 현장 보존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 사고 보고 및 지원요청 ※ 안전사고 예방·대응 및 재발 방지 대책(예시) 참조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에 관한 지방고용노동 관서에 제출
-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발생개요·피해 상황, 조치·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 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기간 내 협의에 착수

##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 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 사고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 경영자, 간부 교직원, 안전·보건 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부터 2일 이내 착수
  -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 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이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 방지 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 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 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심각 (빨간색)

###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천원)						비고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21 학년도	2022 학년도	2023 학년도	합계	
	비상사태 대응 계획에 따라 상황 발생 시 편성						

주체	주요 업무
----	-------

<b>사업주 [장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li> <li>■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li> <li>■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li> </ul>
---------------------	---

<b>안전보건 관리책임자</b>  (총장, 특수학교장, 소속기관장)	<p>&lt;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총괄관리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li> <li>■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li> <li>■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li> <li>■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지휘 감독</li> </ul>
---	--

<b>안전 관리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 (현업근로자 50 ~ 1,000명 : 1명, 1,000명 이상 : 2명 이상)</li> </ul>	<b>보건 관리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 (현업근로자 50 ~ 5,000명 : 1명, 5,000명 이상 : 2명 이상)</li> </ul>
-------------------	---	-------------------	---

<b>관리감독자</b>	<p>&lt;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li> <li>■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등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li> <li>■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li> <li>■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li> </ul>
--------------	--

<b>산업보건의</b>  (현업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 지도</li> <li>■ 근로자의 건강장애의 원인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li> <li>■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등</li> </ul>
--	---

<b>산업안전 보건위원회</b>  (현업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p>&lt;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li> <li>■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li> <li>■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li> <li>■ 중대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li> </ul>
--	--

## 2] 중대재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2조~제4조, 제6조, 제9조 등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1	총무과	주 임	김회집	02-2600-2473	주관부서
2	총무과	직 원	신예슬	02-2600-2474	
3	시설관리과	계 장	김명석	02-2600-2480	지원부서
4	시설관리과	직 원	허 율	02-2600-2482	

### □ 피해현황

구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21 학년도	2022 학년도	2023 학년도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0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0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00
	부상	0	0	0	0	0.00
	계	0	0	0	0	0.00

### □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 (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으로 학교 중대재해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선제적·자율적으로 유해 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안전 체계 구축

#### ○ (환경 조성)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재해 없는 근로환경 조성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조치, 재해발생 시 재해재발 방지대책 수립,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다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교육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 설정(시행령 제4조제1호)**

- 산업재해가 없는 근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을 위해 핵심적인 목표 및 경영 방침 마련

○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 여부 점검(시행령 제4조제3호)**

- 사업장 및 직업 특성에 따라 유해성을 평가하고 유해 요인 발견 즉시 개선
-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장별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개선 여부 점검(분기별 1회)

○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추진(시행령 제4조제4호)**

- 위험성 평가, 재해예방 기술지도,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 위험 요소 개선, 안전보건 교육 등은 필수적으로 예산 확보 및 집행
- 각 부서별 필요 사항 실시(총무과, 시설관리과)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시행령 제4조제5호)**

-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예산에 대한 자율권 확대 추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해당 업무수행 여부를 평가 기준(붙임1)에 따라 상·하반기 각 1회 자체 평가 실시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시행령 제4조제7호)**

-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 청취(반기별 1회 이상)
- 게시판 내 안전보건 건의함을 신설,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상시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을 듣고, 재해예방이 필요한 경우 개선 조치

의견수렴	노사 간담회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 협의)	개선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방문 의견 청취</li> <li>• 의견 청취함(WIKI 게시판)</li> <li>• 안전보건교육</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쓰레기 분리수거 봉투가 너무 커서 (100L) 근골격계에 부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내 분리배출 봉투를 50L로 교체</li> </ul>

○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준수(시행령 제4조제8호)**

-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사항 매뉴얼\*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 급박한 위험에 대비

재해 유형 확인 및 보고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및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미한 사고</li> <li>• 3일 이상 휴업재해</li> <li>• 중대재해(즉시 보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발 방지계획서 작성</li> <li>• 수시 위험성 평가</li> <li>• 수시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제출</li> <li>- 업무상질병일 경우 산재 승인일 기준 1개월 이내</li> </ul>	⇒

○ **도급, 용역, 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시행령 제4조제9호)**

-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점검 (반기 1회 이상)

○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담당 부서 지정(시행령 제4조제2호)**

- 업무의 중요도·계속성을 감안, 중대재해 업무담당 전담인력(2인 이상)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 조직 설치 추진
- 전담 조직의 중대재해 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이므로 두 업무는 구분 운영 추진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현장 보존

-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현장 관계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 조치
-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한다거나 장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같이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를 제외한 사고 현장 보존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 보고 및 지원요청 ※ 안전사고 예방·대응 및 재발 방지 대책(예시) 참조**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에 관한 지방고용노동 관서에 제출
-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발생개요·피해 상황, 조치·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 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기간 내 협의에 착수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 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 경영자, 간부 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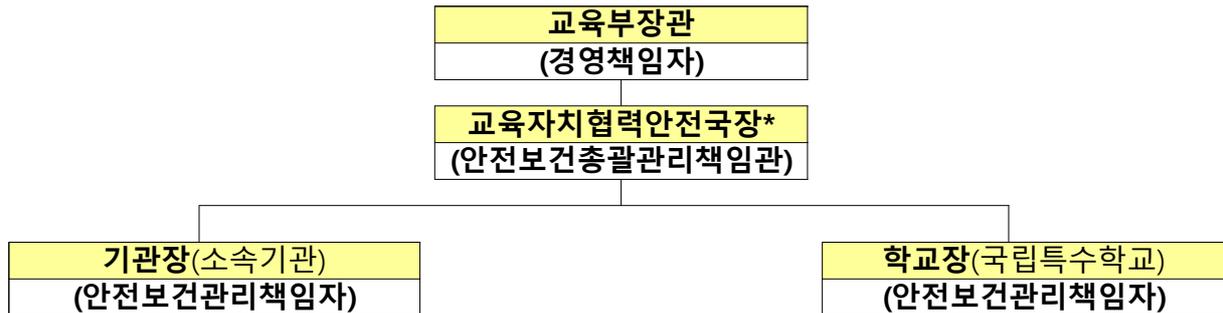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 방지 조치 개발·시행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대상 : 교육부(본부), 소속기관(6기관), 국립특수학교(5교)



\* 법적으로 교육부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전담 조직 설치 의무는 없으나 대상 기관의 상시근로자 수가 1,443명인 점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구성

○ 역할과 책임

구분	주요 역할
경영책임자(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대표 및 총괄</li> </ul>
안전보건총괄 관리책임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책임자를 보좌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의 철저 이행, 사전·사후 지원 및 지도 등 관련업무전반을 총괄·지도</li> <li>① 소속기관과 국립특수학교의 안전관리체계 구성 이행 여부 점검 확인</li> <li>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지원</li> <li>③ 직종별 사업장별 위해 요인 확인 개선 방법 지도 및 지원</li> <li>④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추진계획 수립·운영</li> <li>⑤ 도급·용역 위탁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등</li> <li>* 소속기관, 국립특수학교 현장에 재해예방 안착 전까지 안전보건 이행상황 수시 점검(현장 방문 및 서면 포함 월 1회 이상)</li> </ul>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학교장, 소속기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li> <li>•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추진계획 수립·운영</li> <li>•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li> <li>•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 방침 준수</li> </ul>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천원)					합계	비고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21 학년도	2022 학년도	2023 학년도		
-	비상사태 대응 계획에 따라 상황 발생 시 편성						

## 6. 기타

□ 비상사태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별도 계획수립·관리 시 주요 사항 요약작성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통합방위법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자원관리·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9조2, 제13조의5 등

#### 통합방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적(敵)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17조, 제13조의5 등

※ 「비상 대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2. 7. 5. 시행 예정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1	기획예산과	과 장	배근철	02-2600-2431	주관부서
2	기획예산과	주 임	신민규	02-2600-2432	
3	총무과	주 임	김회집	02-2600-2473	지원부서
4	총무과	직 원	신예슬	02-2600-2474	

□ 피해현황

구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21 학년도	2022 학년도	2023 학년도	평균
발생건수						
재산피해(백만원)						
인명피해	사망(실종)					
	부상					
	계					

□ 원인분석

○ 해당사항 없음

-

□ 예방·대응 및 재발 방지 대책

- **(계획수립)** 비상시 행동 요령, 비상대비물자 준비·사용요령, 부상자 응급조치, 인명·시설 피해복구 등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한 계획 등 수립
  -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 승인
  - 민방공 대피계획 수립, 공공용 대피시설 지정(지자체 협조)
- **(비상조직)** 전시·비상 시 대응을 위해 비상조직체계 구축을 통해 부서·개인별 임무·역할의 명확한 규정·부여 및 신속·정확한 의사결정과 상황통제·관리
  - 합동상황실 구성·준비(비상연락망, 전화·팩스, 비상전력 등 점검)
- **(교육·훈련)**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필수·핵심요원 등에 대한 주기적인 비상대비 교육과 재난대비 훈련·민방위 훈련 등과 연계하여 사태·상황별 정기적인 훈련 실시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천원)						비고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21 학년도	2022 학년도	2023 학년도	합계	
-	비상사태 대응 계획에 따라 상황 발생 시 편성						

### III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 1. 대학보험(공제) 가입 총괄 현황

구분	대인(학교 구성원)	대물(교육시설)
공통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연구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2. 대학 배상책임보험(공제)

##### 민법 & 학교안전법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학교안전법

**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①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5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 보상공제 사업

###### ※ (관련 규정) 보험업 감독규정

☞ **제1-2조의2(보험계약 및 보험 종목의 구분 기준)** 영 제1조의2제5항에서 "보험계약의 구체적 구분 기준" 및 영 제8조제2항에서 "보험 종목의 구체적 구분 기준"이란 별표1에 따른 구분 기준을 말한다.

#### □ 가입 현황

(단위 : 천원)

기준 년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1인당 보험료 (A)	학생수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인적		물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9학년도										
2020학년도	업그레이드 대학종합보험	2019-06-01 2020-06-01	2	1,400	3,590	0	0	0	0	
2021학년도						0	0	0	0	
2022학년도	업그레이드 대학종합보험	2021-12-01 2022-12-01	2	1,650	4,479	0	0	0	0	
2023학년도	업그레이드 대학종합보험	2022-12-01 2023-12-01	2	1,561	4,425	0	0	0	0	

#### □ 보상한도

(단위 : 천원)

담보대상	보상한도/자기부담금(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신입생 OT중 치료비			
신입생 OT중 상해사망후유장애	100,000	500,000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대인배상)	100,000	1,000,000	자기부담금 10만원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대물배상)	-	50,000	자기부담금 10만원
학교생활 중 상해사망후유장애	100,000	500,000	
교내외 치료비	2,000	2,000	

### 3. 교육시설안전보험(공제)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 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관련 기준) 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공제 공제급여 기준

[공제급여 대상] 화재(벼락 포함)·폭발·붕괴·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한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한 공제가입 목적물의 손해 또는 제3자의 법률상 배상책임(대인·대물) 등

#### □ 가입 현황

(단위 : 천원)

기준 년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1인당 보험료 (A)	학생수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인적		물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9학년도	배상책임공제	19.01~12			2,633					
2020학년도	배상책임공제	20.01~12			2,865					
2021학년도	배상책임공제	21.01~12			3,299					
2022학년도	배상책임공제	22.01~12			3,299					
2023학년도	배상책임공제	23.01~12			3,645					

#### □ 보상한도

(단위 : 천원)

담보대상	보상구분	보상한도액(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건물	일반			
	고가			
배상책임	화재	150,000	1,000,000	
	시설소유자	300,000	500,000	
물품				

#### 4. 연구실안전보험(공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 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 가입 현황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1인당 보험료 (A)	학생수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인적		물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9학년도	연구실 안전공제	2019. 04. 01 2020. 03. 31		245	316	1	70			
2020학년도	연구실 안전공제	2020. 04. 01 2021. 03. 31		241	279	1	81			
2021학년도	연구실 안전공제	2021. 04. 01 2022. 03. 31		306	355					
2022학년도	연구실 안전공제	2022. 04. 01 2023. 03. 31		298	332					
2023학년도	연구실 안전공제	2023. 04. 01 2024. 03. 31		295	393	1	56			

##### □ 보상한도

(단위 : 천원)

담보대상	보상한도/자기부담금(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유족급여	200,000	200,000	
장해급여	200,000	200,000	
요양급여	1,000	1,000	
장의비	10,000	10,000	
입원급여	50	50	
수업료 손실 지원금	한도		
기숙사비 손실 지원금	한도		

## IV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 1. 재난안전훈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4(재난 대비훈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이하 "훈련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 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1	총무과	주 임	김회집	02-2600-2473	주관부서
2	총무과	직 원	신예슬	02-2600-2474	
3	시설관리과	계 장	김명석	02-2600-2480	지원부서
4	시설관리과	직 원	허 율	02-2600-2482	

2023학년도 교육·훈련 계획

####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기숙사화재대피훈련	1시간	학기별 조사	
교직원	안전교육	1시간	학기별 조사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기숙사 화재대피 훈련	· 년2회 기숙사 입주자를 대상으로 야간 화재대피훈련 실시
교직원 안전교육	· 교직원대상 년2회 안전교육 실시 (전기/소방)

2023학년도 교육·훈련 결과

####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상반기 기숙사 화재대피훈련	2023. 04. 17.	1	88	
상반기 교직원 안전교육	2023. 04. 10.	0.58	68	
하반기 기숙사 화재대피훈련	2023. 10. 31.	1	47	
하반기 교직원 소방훈련	2023. 08. 25.	0.4	84	

#### ○ 추진내용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기숙사 화재대피 훈련	년2회 상하반기 기숙사 화재대피훈련			
교직원 안전교육	년2회 교직원 안전교육			



### 3. 대학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1	총무과	주 임	김회집	02-2600-2473	주관부서
2	총무과	직 원	신예슬	02-2600-2474	
3	시설관리과	계 장	김명석	02-2600-2480	지원부서
4	시설관리과	직 원	허 울	02-2600-2482	

2023학년도 교육·훈련 계획

####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2023학년도 교육·훈련 결과

####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교직원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 4. 연구실 안전교육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제20조(교육·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과 방법, 교육·훈련 담당자의 요건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1	시설관리과	안전환경관리자	김명석	02-2600-2480	주관부서
2	시설관리과	안전환경관리 부	허 율	02-2600-2482	
3	간호학과	학과장	이지연	02-2600-2565	지원부서
4	식품영양학과	학과장	정민유	02-2600-2551	

2023학년도 교육·훈련 계획

#####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신규	안전교육	1회	연구활동종사자	550,000
정기	안전교육	2회	연구활동종사자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신규안전교육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정기안전교육	연구실안전/전기/소방/가스/유해인자 취급 등

2023학년도 교육·훈련 결과

#####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신규	안전교육	집합교육		550,000
정기	안전교육	온라인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신규안전교육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정기안전교육	연구실안전/전기/소방/가스/유해인자 취급 등



## 6. 성범죄 예방 교육

### 성폭력방지법 등

#### 성폭력방지법

**제5조(성폭력 예방 교육 등)**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 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시행,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 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 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성매매 예방 교육)**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 교육 등 방지 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등과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1	인권상담실	상담실장	최영미	02-2600-2589	주관부서
2	인권상담실	상담사	최은영	02-2600-2297	

2023학년도 교육·훈련 계획

####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학생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6	1,139	400
교직원	교직원 대상 폭력예방 통합교육 및 고위직 특별교육 실시	2	195	400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신입생 대상 폭력 예방 교육	-성적으로 평등한 대학 문화 조성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신입생 대상 폭력예방교육을 통한 학내 음주 강요, 가혹 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 및 안전사고 예방
재학생 대상 폭력 예방 교육 (유학생, 대학원생 포함)	-대학생활 중 공감 협력을 바탕으로 타인들과의 건강한 상호작용이 되도록 예방 교육 시행
교직원 대상 폭력 예방 교육	-구성원들의 성인식 개선을 통한 젠더폭력예방에 대한 동기 부여
고위직 대상 특별교육	-사건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고위직 특별교육 시행
인권 교육_인권 첫걸음	-인권 관점에서의 인간에 대한 존엄과 자유, 평등과 연대를 교육

□ 2023학년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03/09	12시~13시	110	0
	04/12	11시~12시	54	0
	05/25	11시~12시	60	200
	06/07~07/21	LMS 상시운영	364	200
	10/17~19	11시~12시	516	200
	10/23~12/29	LMS 상시운영	운영중	200
	03월~06월	LMS 상시운영	391	0
	03월~08월	LMS 상시운영	368	0
교직원	04/03~08/31	4시간(온라인 상시운영)	95	0
	11/21	10시~12시	18	400
	09/12~11/30	4시간(온라인 상시운영)	110	0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신입생 대상 폭력 예방 교육	-성평등한 대학 문화 조성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신입생 대상 폭력 예방 교육을 통한 학내 음주 강요, 가혹 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 및 안전사고 예방
재학생 대상 폭력 예방 교육 (유학생, 대학원생 포함)	-대학 생활 중 공감 협력을 바탕으로 타인들과의 건강한 상호작용이 되도록 예방 교육 시행
교직원 대상 폭력 예방 교육	-구성원들의 성인식 개선을 통한 젠더폭력예방에 대한 동기 부여
고위직 대상 특별교육	-사건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고위직 특별교육 시행

## 7. 비상대비 교육·훈련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4(비상 대비 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의5에 따라 매년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비상 대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 대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비상 대비 교육 계획에 따라 비상 대비 교육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1	기획예산과	과 장	배근철	02-2600-2431	주관부서
2	기획예산과	주 임	신민규	02-2600-2432	
3	총무과	주 임	김회집	02-2600-2473	
4	총무과	직 원	신예슬	02-2600-2474	지원부서

2023학년도 교육·훈련 계획

####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2023학년도 교육·훈련 결과

####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 V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 1.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대학교 캠퍼스 내외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을 위해 지자체 재난 안전 부서,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 유관기관과 재난전문가(교수, 박사 등),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캠퍼스 내외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계획, 대학 학교 안전 관련주요 정책, 유관기관 협업과제 발굴 등  
     안전 및 보건의 확보 및 개선에 관한 의견 청취(년 2회 이상)

### 2. 사고 유형별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법

#### 재난 및 안전사고

#####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구조대	119	
강서소방서화곡119안전센터	02-6981-5170	안전센터
서울강서경찰서화곡3파출소	02-2604-2133	파출소
서울강서경찰서	02-2620-9270	형사과
강서구청	02-2600-5204	재난안전과
이대목동병원	02-2650-5114	응급실
극동파워(전기위탁)	1544-3002	기술지원팀

#####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종합상황실 (재난 전 분야)	02-2600-2470	사무처
	02-2600-2480	시설관리과

#### 안전사고

#####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구조대	119	
강서소방서화곡119안전센터	02-6981-5170	
서울강서경찰서화곡3파출소	02-2604-2133	
서울강서경찰서	02-2620-9270	형사과
강서구청	02-2600-5204	재난안전과
이대목동병원	02-2650-5114	응급실

##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종합상황실 (재난 전 분야)	02-2600-2470	사무처
	02-2600-2480	시설관리과

### 감염병 확산

####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중앙사고수습본부	044-202-1843	보건사무관
중앙방역대책본부	043-719-9301	상황실
국립중앙의료원	02-2276-7114	감염의학센터
환경부	1577-8866	
강서보건소	02-2600-5818	보건행정과

##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종합상황실 (재난 전 분야)	02-2600-2470	사무처
	02-2600-2461	학생과(코로나대응)

### 범죄

####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강서소방서화곡119안전센터	02-6981-5170	
서울강서경찰서화곡3파출소	02-2604-2133	
이대목동병원	02-2650-5114	응급실
서울강서경찰서	02-2620-9270	형사과

##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종합상황실 (재난 전 분야)	02-2600-2470	사무처
	02-2600-2480	시설관리과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구조대	119	
강서소방서화곡119안전센터	02-6981-5170	
서울강서경찰서화곡3파출소	02-2604-2133	
서울강서경찰서	02-2620-9270	형사과
강서구청	02-2600-5204	재난안전
이대목동병원	02-2650-5114	응급실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종합상황실 (재난 전 분야)	02-2600-2470	사무처
	02-2600-2480	시설관리과

 비상사태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구조대	119	
강서소방서화곡119안전센터	02-6981-5170	
서울강서경찰서화곡3파출소	02-2604-2133	
서울강서경찰서	02-2620-9270	형사과
강서구청	02-2600-5204	재난안전
이대목동병원	02-2650-5114	응급실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종합상황실 (재난 전 분야)	02-2600-2470	사무처
	02-2600-2480	시설관리과

## VI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1. 역할과 임무

- 대학안전관리계획 작성 부서에서는 계획의 수립·시행, 이행점검, 대책 수립 수행
- 위험별 상황관리 전담 부서에서는 지휘부(총괄 담당, 상황 총괄), 실무반(상황 대응, 사고 수습, 당직), 협조부서(언론 대응, 예산 협력, 유관기관 협력) 등으로 구분하여 위험 상황 대응 및 관리 수행

### 2. 관계 법령 등 연계

- 관련 법령, 재난안전관리 규정, 및 위기 대응 표준·실무·행동매뉴얼 등을 기반으로 대학안전관리계획 수립 필요
  - 관계 법령·규정·매뉴얼 개정 시 대학 안전관리계획 보완 필요
- 시도 및 시·군·구 등 유관기관 안전관리계획과 연계·협조하여 대학 안전 관리 집행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 수립 필요

### 3. 대학 업무 연속성 계획(BCP : Business Continuity Plan) 수립·시행

#### ※ BCP 가이드라인 배포('22.)

-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비상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팀·개인별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한 후 개인별 임무 숙지를 위한 교육·안내 실시
- 각 대학은 중대본 발표, 학내 확진자 발생률에 따라 시행할 비상 대응계획인 기능 연속성 계획 사전 수립 및 학내 공유
  - 비상 상황에도 유지해야 할 필수·핵심 기능을 사전에 설정하고, 유행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치

### 4. 대학별 안전 관리 규정 마련·운영

- 대학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대학별 자체 '안전 관리 규정' 마련·운영
  - 대학 안전 관리의 구체적 적용 대상 및 범위 설정
  - 안전교육 실시, 안전대책의 점검·확인 등 학교장의 책무 규정
  - 대학 안전 관리 위험성 평가 대상 및 방법·절차 규정
  - 대학 안전사고 예방·조사 위원회 구성·운영관리
  - 대학 안전 관리 조직 구성·운영관리
  - 안전 관리 협의체 구성·운영관리 등

**붙임1**
**위험 요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총괄)**

위험 유형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1. 재난	① 자연 재난	시설관리과	계장	김명석	02-2600-2480	주관부서	
		시설관리과	직원	허울	02-2600-2482		
		총무과	주임	김회집	02-2600-2473		협조부서
		총무과	직원	신예슬	02-2600-2474		
	② 사회 재난	시설관리과	계장	김명석	02-2600-2480	주관부서	
		시설관리과	직원	허울	02-2600-2482		
		학생과	과장	이현주	02-2600-2461		협조부서
		학생과	직원	김예은	02-2600-2462		
2. 안전 사고	① 대학안전 사고	학생과	과장	이현주	02-2600-2461	주관부서	
		학생과	직원	김예은	02-2600-2462		
		총무과	주임	김회집	02-2600-2473		협조부서
		총무과	직원	신예슬	02-2600-2474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시설관리과	계장	김명석	02-2600-2480	주관부서	
		시설관리과	직원	허울	02-2600-2482		
		총무과	주임	김회집	02-2600-2473		협조부서
		총무과	직원	신예슬	02-2600-2474		
	③ 연구실 사고	시설관리과	계장	김명석	02-2600-2480	주관부서	
		시설관리과	직원	허울	02-2600-2482		
		총무과	주임	김회집	02-2600-2473		협조부서
		총무과	직원	신예슬	02-2600-2474		
3. 감염병 확산	① 일반 범죄	기획예산과	과장	배근철	02-2600-2431	주관부서	
		기획예산과	주임	신민규	02-2600-2432		
		학생과	과장	이현주	02-2600-2461		협조부서
		학생과	직원	김예은	02-2600-2462		
3. 범죄	① 일반 범죄	총무과	주임	김회집	02-2600-2473	주관부서	
		총무과	직원	신예슬	02-2600-2474		
		학생과	과장	이현주	02-2600-2461		협조부서
		학생과	직원	김예은	02-2600-2462		
	② 성범죄	인권상담실	실장	최영미	02-2600-2589	주관부서	
		인권상담실	직원	최은영	02-2600-2299		
	4.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① 산업 재해	총무과	주임	김회집	02-2600-2473	주관부서
			총무과	직원	신예슬	02-2600-2474	
시설관리과			계장	김명석	02-2600-2480	협조부서	
시설관리과			직원	허울	02-2600-2482		
② 중대 재해		총무과	주임	김회집	02-2600-2473	주관부서	
		총무과	직원	신예슬	02-2600-2474		
		시설관리과	계장	김명석	02-2600-2480		협조부서
		시설관리과	직원	허울	02-2600-2482		
5. 기타	① 비상 사태	기획예산과	과장	배근철	02-2600-2431	주관부서	
		기획예산과	주임	신민규	02-2600-2432		
		총무과	주임	김회집	02-2600-2473		협조부서
		총무과	직원	신예슬	02-2600-2474		

**붙임2**
**위험 요인별 피해 현황(총괄)**

위험 유형		구 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21 학년도	2022 학년도	2023 학년도	평균	
1. 재난	① 자연재난	발생건수							
		재산피해(백만원)							
	인명피해	사망(실종)							
		부상 계							
② 사회재난	발생건수	재산피해(백만원)							
		사망(실종)							
	인명피해	부상 계							
		계							
2. 안전사고	① 대학안전 사고	발생건수							
		재산피해(백만원)							
		인명피해	사망(실종)						
			부상 계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발생건수							
		재산피해(백만원)							
		인명피해	사망(실종)						
			부상 계						
	③ 연구실 사고	발생건수	1	1	0	0	1	0.60	
		재산피해(백만원)					0		
		인명피해	사망(실종)						
			부상 계	1	1	0	0	1	0.60
3. 감염병	① 일반범죄	발생건 수		6	7				
		피해자 수		6	7				
		발생건 수				2	1		
		피해자 수							
4. 범죄	① 일반범죄	발생건 수							
		피해자 수							
	② 성범죄	발생건 수				2	1		
		피해자 수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①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산피해(백만원)							
		인명피해	사망(실종)						
			부상 계						
	② 중대재해	발생건수							
		재산피해(백만원)							
		인명피해	사망(실종)						
			부상 계						
6. 기타	① 비상사태	발생건수							
		재산피해(백만원)							
		인명피해	사망(실종)						
			부상 계						

**붙임3**
**위험 요인별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총괄)**

위험 유형	대책명	연도별 예산(천원)					합계	비고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21 학년도	2022 학년도	2023 학년도			
1. 재난	① 자연재난	한국교육시설안전원	2,633	2,865	3,299	3,299	3,645	15,741	공제가입
		계	2,633	2,865	3,299	3,299	3,645	15,741	
	② 사회재난	소방시설 정기점검	4,620	4,620	4,620	4,620	4,730	23,210	
		소방시설 공사	6,006		4,972	18,227	6,600	35,805	
		계	10,626	4,620	9,592	22,847	11,330	59,015	
2. 안전사고	① 대학안전사고	경영자배상책임보험							
		계							
	② 교육시설안전사고	냉난방기유지관리	13,451	5,411	1,155	3,294	13,877	37,188	
		시설공사	61,198	109,192	75,938	110,475	223,534	580,337	
		수도요금	32,249	14,329	21,198	46,975	85,360	200,111	
		승강기위탁	6,300	8,106	7,958	8,505	8,549	39,418	
		전기요금	95,477	93,244	112,349	137,533	174,621	456,065	
		전기위탁	13,758	10,560	10,560	10,560	10,560	55,998	
		시설소모품	9,400	11,500	9,176	10,244	24,000	64,320	
		전기소모품	6,323	5,500	7,881	9,693	21,797	44,101	
		전화요금	6,513	7,689	7,693	7,166	9,070	38,131	
		전기공사	38,874	32,141	43,589	4,587		119,191	
	도시가스	32,865	28,094	42,327	52,678	56,601	212,565		
	석면안전			1,030	58,362		59,392		
		계	316,408	325,766	333,761	460,072	470,810	1,906,817	
③ 연구실안전사고	연구실안전공제	316	279	355	332	393	1,675		
	연구실안전환경관리	4,352	4,800	2,297	7,059	8,867	27,375		
	계	4,668	5,079	2,652	7,391	9,260	29,050		
3. 감염병	① 감염병	고가/저수조 청소	3,100	2,500	3,053	3,286	3,288	15,227	
		정화조 청소	4,533	4,600	4,533	4,533	4,688	22,887	
		환경미화위탁	124,551	155,940	152,050	168,742	197,090	798,373	
		환경미화소모품	10,767	8,386	5,005	7,671	16,460	48,289	
		방역	4,894	4,788	4,776	4,848	6,168	25,474	
		코로나 예방활동 지원		23,431	7,722	11,066		42,219	
		비대면 수업 지원		144,619	21,161			165,780	
		계	147,845	344,264	198,300	200,146	227,694	1,118,249	
3. 범죄	① 일반범죄	본부무인기계용역	12,804	12,804	14,968	15,576	16,763	72,915	
		교내경비	66,272	64,200	66,858	72,248	75,768	345,346	
		계	79,076	77,004	81,826	87,824	92,531	418,261	
	② 성범죄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200	800	1,000	학생
		고위직 성인지감수성 교육				300	400	700	교직원
	계	0	0	0	500	1,200	1,700		
4.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① 산업재해	-							비상사태 대응계획에 따라 상황 발생 시 편성
	② 중대재해	-							
5. 기타	① 비상사태	-							비상사태 대응계획에 따라 상황 발생 시 편성